

의안번호	2205314
의 퇴 인	성일종 의원
회 답 일	2024.11.13.
추계번호	24C489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 (임상교수요원)	(제1항) 치과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教授要員)을 둔다. 이 경우 제6조제6호1)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임상교수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과병원의 공공임상교수요원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재량규정
2	안 제15조 (출연 또는 보조)	(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과병원이 제6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임상교수요원) 안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기존 출연금 및 보조금²⁾ 외에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

- 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6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한 보조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지원의 기준·관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지출규모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³⁾

- 현행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은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법 제15조제1항),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에 대한 ‘보조’(법 제15조제2항),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를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정부 보조’에 대하여 규정(법 제15조제3항)
 - －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에 총 111,369백만원(2024년 예산기준)을 편성⁴⁾ (서울대병원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 2,726백만원, 분당서울대병원 복합진료지원동 건립사업 1,544백만원, 배곧서울대병원 건립사업 2,843백만원,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병동 리모델링 사업 668백만원, 서울대병원 의료장비 교체 및 구매사업 4,925백만원 포함)

[표 1]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교육부) 예산 산출세부내역

예 산	산출내역
사업출연금(350-02) 105,019,000천원	가. 시설확충 및 보수 (56,262,000천원) 나. 장비구입 및 교체 (31,085,000천원) 다. 정책사업 (17,672,000천원) ⁵⁾
민간경상보조(320-01) 6,350,000천원	정책사업 (6,350,000천원) ⁶⁾

자료: 교육부 2024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 ③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 3) 이외에 안 제12조는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치과병원의 공공임상교수요원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2년 이후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2년 150명, '23년 150명, '24년 50명의 정원으로 운영함(서울대병원 포함) 다만, 해당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사업'은 치과병원이 아닌 국립대학병원에 대하여 실시되었고, 2025년도 예산안은 31명의 인건비만 제출됨. 이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치과의사인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예산이 신규 편성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존 공공임상교수요원제 하에서의 정원 충족율이 '22년 정원 150명 대비 현원 23명, '23년 정원 150명 대비 28명, '24년(8월 기준) 정원 50명 대비 현원 32명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 개정안 이후 계획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공공임상교수요원의 정원과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참고로, 2024년과 2025년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사업의 공공임상교수 1인당 지원 단가는 1억 2,700만원임
- 4) 보건복지부에서도 771억원(2022년 기준)을 국립대병원에 지원('23.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5) 임상교육훈련센터건립비
 - 6)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사업

- 개정안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게 될 경우 보조금 관련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 내역 및 규모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분야, 지역 및 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밝히고 있는바, 관련 사업 지원⁷⁾이 추가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음
 - 참고로 '24년 8월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개혁 분야별 투자계획(안) 중 권역 책임의료기관(국립대병원 등)을 수도권 대형병원과 동일 수준의 선도적 지역병원으로 양성하는데 1,836억원('25년), 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및 특화 연구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 연구 생태계 혁신을 위하여 128억원('25년), 국립대병원 시설·장비를 위한 829억원('25년, 교육부)이 계획된 바 있으나⁸⁾ 해당 실행방안이 1차 계획안이고 '24년 말과 '25년 초에 후속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므로 향후 사업 증가 및 재정 투입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개정안과 관련된 재정소요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7)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2023.10.)’에서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의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교수 정원 대폭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한국형 ARPA-H 필수의료 장기투자, 진료-연구 병행 지원, 산학협력단 설치 등 R&D 투자’, ‘중증·응급 보상 강화, 필수진료센터 보상 강화 지속 확대 등 공공정책수가’, ‘노후 의료 시설·장비 개선 지원 확대,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재원 확보 등 인프라 첨단화’와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한 ‘국립대병원 중심 인력·병상 즉각 대응체계 확립 및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협력 강화로 대응 기반 확충’ 등을 발표한바 있음

8)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보건복지부, 2024.08.30.) 참조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